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단위: 명]

직렬(직류) 및 직급	선발예정 인원	담당예정업무	근무예정기관
공업(일반기계) 8급	2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기계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 포함)
공업(일반전기) 8급	8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전기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시설(건축) 8급	12	○ 교육청(산하기관 포함)의 건축분야 시설사업 관련 업무 - 공사발주 및 공사감독, 준공검사, 하자검사 - 실태조사 및 예산계획 수립 -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 내진보강, 석면관리 등 안전 관련 업무 ○ 학교시설 안전점검 업무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합 계	**22**		

2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서류전형 평가기준>

① 자격요건 ② 자기소개서 ③ 직무수행계획서 ④ 우대요건 및 가산점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및 제50조의3에 따라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18세 이상** (2008.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 가능**

-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는 사람

  ※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계산 방법은 「민법」 제160조에 따름)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응시 결격사유**

- **최종(면접)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

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④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나. 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table>
<tr><th>직렬(직류)
및 직급</th><th>자격요건</th></tr>
<tr><td>공업(일반기계)
8급</td><td>○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기계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한 무대기계전문인 또는 무대음향전문인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table>
<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기 술 사</td><td>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td></tr>
<tr><td>기 능 장</td><td>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td></tr>
<tr><td>기 사</td><td>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tr>
<tr><td>산업기사</td><td>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td></tr>
<tr><td>기 능 사</td><td>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직렬(직류)
및 직급</th><th>자격요건</th></tr>
<tr><td>공업(일반전기)
8급</td><td>○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기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한 무대조명전문인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table>
<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기 술 사</td><td>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td></tr>
<tr><td>기 능 장</td><td>전기</td></tr>
<tr><td>기 사</td><td>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tr>
<tr><td>산업기사</td><td>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td></tr>
<tr><td>기 능 사</td><td>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td></tr>
</table>
</td></tr>
<tr><td>시설(건축)
8급</td><td>○ 아래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관련 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건축 관련 분야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table>
<tr><th colspan="2">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기 술 사</td><td>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td></tr>
<tr><td>기 능 장</td><td>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td></tr>
<tr><td>기 사</td><td>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tr>
<tr><td>산업기사</td><td>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td></tr>
<tr><td>기 능 사</td><td>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td></tr>
</table>
</td></tr>
</table>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또는 입상) 이후 임용예정 직무관련분야(임용예정 직류의 담당예정업무 분야)의 경력**이어야 함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며, 단시간근로자(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응시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재(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위 표의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명칭 변경 및 통폐합된 자격증은 해당되는 현재 명칭의 자격증도 임용시험 응시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4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가. 관련분야 자격증 (※ 자격요건 자격증 제외)

○ **배점**: 최대 30점까지 인정

구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점수	15점			10점	5점

※ **자격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을 제외하고, 우대요건으로 동일 종목에 대해 자격등급별로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최상위 자격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만 인정**

(예시1) 일반전기 직류 응시자가 "자격요건"으로 전기 기능사+경력 4년을 제출하고, "우대요건"으로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 **자격요건 충족**, **우대요건** 전기 기사에 해당하는 **15점만 인정**

(예시2) 일반전기 직류 응시자가 "자격요건"으로 전기 기능사+경력 4년을 제출하고, "우대요건"으로 전기 산업기사, 철도신호 **기사**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 **자격요건 충족**, **우대요건** 전기 산업기사(10점)+철도신호 기사(15점)=**25점 인정**

나. 관련분야 근무경력 (※ 자격요건 경력 제외)

○ **배점**: 최대 20점까지 인정

- 근무개월 수 × 0.4점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또는 입상) 이후 임용예정 직무관련분야(임용예정 직류의 담당예정업무 분야)의 경력**이어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시간근로자(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경력증명서에 반드시 응시자의 주당 근로시간 및 주당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재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다. 가산점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환산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환산 점수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환산 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비율은 본인이 직접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환산 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본인이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우대요건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지막 날까지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요건은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을 잘못 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합격이 취소되거나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자격증 및 근무경력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심사 시에만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은 점수로 환산되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적용함

5 시험 일정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차 서류전형	-	-	2026. 4. 10.(금)
제2차 면접시험	2026. 4. 10.(금)	2026. 4. 25.(토)	2026. 5. 12.(화)

※ 시험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뉴스/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에 공고하고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 면접시험의 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 관련서류 등기우편 제출)

가. 접수기간: 2026. 2. 23.(월) 09:00 ~ 2. 25.(수) 18:00

※ 취소마감일시: 2. 26.(목) 18:00

나.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관련서류는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별도 제출

○ 인터넷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 **(접수처)**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속 → '지방공무원' 선택 → '경기도교육청' 선택 → 로그인 → 원서접수 → 응시분야 선택
- **(응시수수료)** 8급 5,000원
- **(납부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 3.5×4.5cm(파일 100Kb 이하), JPG형식, 해상도 100dpi, 컬러 증명사진
  ※ 사진은 **면접시험 당일 본인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시험 운영 시에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응시표 출력·지참)**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에서 **2026. 4. 10.(금) 10:00**부터 출력 가능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응시표 지참
  ※ 원서접수 시 출력한 접수번호는 응시번호와는 다르므로, 응시표 출력기간에 응시표를 반드시 출력하여 응시번호 확인

- **(수정·취소)** 원서접수 마감일 전까지 접수내용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후 취소기간에는 추가접수 및 기존 원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불가

- **(응시수수료 환불)**

▶ **취소에 따른 환불**: 취소기간 내에 전액 환불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됨 **(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환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는 아래 환불을 위한 증빙서류(원본)를 관련서류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대상	제출 서류(원본)	비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지원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출 서류(원본) 검토 후 응시수수료 환불 실시 예정

- **(유의사항) 인터넷 접수와 별개로 반드시 관련서류 등기우편 제출**

※ 관련서류 미제출 시 응시 불가

○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 **(제출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인재선발담당(☎ 031-820-0572~0575)**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 (기한) 원서접수 마감일(2026. 2. 25.)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부득이한 사유로 등기우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마감 기한 내 사전 연락 후 방문 제출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학력 등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7 제출서류[아래 순서로 정리하여 클립 고정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구분	내용	비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 제출여부 체크하여 제출 ※ 1번 응시원서: 인터넷 접수 ※ 2~10번 관련서류: 등기우편(익일특급)으로 제출 (원서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필수
1. 응시원서	○ 온라인 교직원 채용(https://edurecruit.go.kr)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접수 완료	필수
2. 이력서 (별지 제1호 서식)	○ 관련분야 자격증 및 근무경력에 한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및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력에 한해 인정(증빙서류 미제출 시 인정 불가)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 A4 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필수
5. 자격요건 증빙서류 (해당서류 모두 제출)	○ 관련분야 **자격증**(입상내역) -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혹은 입상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 관련분야 **근무경력** **① 경력증명서 (별지 제4호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본(원본)만 인정 - 근무기간, 소속 및 직급(위),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직무 관련분야 여부를 판단하므로,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시 관련분야임을 확인 후 제출) - 주당 소정근로시간 명시(주 40시간 등) ※ 단시간근로자(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응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 및 주당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명시 -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② 경력 증빙서류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건강보험 외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고용보험(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등 제출 가능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등으로 검증이 불가한 경력은 인정 불가	필수

구분	내용	비고
6. 우대요건 증빙서류 (해당서류 모두 제출)	○ 상동	해당자
7.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2026. 2. 12.) 이후** 발행분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변동사항(2026. 1. 1.이전부터)** 포함하여 발급	필수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필수
9.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 자필 서명 필수	필수
10. 기타 증빙서류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대상자 종류(가산비율) 및 보훈(증서)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본) ○ 응시수수료 환불 증빙서류 등	해당자

※ 제출서류 중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뉴스/소식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란에 공고합니다.

○ 원서접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 및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재공고 시 종전 공고의 기 접수자는 재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인당 1개 직류만 지원 가능(중복접수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이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6. 5. 12. ~ 2026. 5. 26.

○ 시험실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되는 경우 다른 임용기관으로의 전출은 4년간 제한됩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031-820-0572~05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